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 개정

1. 개정 취지

국제규격(IEC) 수준으로 개편한 강제적용 안전기준을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제1항 [별표1]에 추가하여 국제규격 체제 전환에 따른 전기용품의 기술개발 및 무역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

2. 주요 개정 내용

- 강제적용 안전기준 추가 [별표 1] : 6개 기준
 -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용커패시터, 제2-3부:IPX0급 초과와 보호등급을 갖는 기기용커패시터 (K 60320-2-3)
 - 램프부속품, 방전등용안정기(형광램프 제외)의 성능 요구사항(K 60923)
 - 램프제어장치, 제2-1부:시동장치(글로우스타터 제외)에 대한 개별요구사항(K 61347-2-1)
 - 램프제어장치, 제2-8부:형광램프용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(K 61347-2-8)
 - 램프제어장치, 제2-10부:교주파 냉음극방전관(네온관)용 전자식인버터 및 컨버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(K 61347-2-10)
 -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, 제2부: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(K 70000)

3. 자료 입수 방법

-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관한 정보는
 - ①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<http://www.ats.go.kr>)를 방문, 공산품안전인증을 클릭하여 전기용품중 안전기준을 클릭하여 동 자료를 한글 파일로 내려받거나
 - ②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<http://www.ats.go.kr>)의 공지사항에서 동 자료를 한글 파일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음.

[붙임]

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3 - 94 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2003. 2. 18
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개정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제1항의 [별표 1]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기준번호	기준명	제정일자	개정일자	비고(참고규격)
K 60320-2-3	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키움커플러, 제2-3부:IPX0급 초과외 보호등급을 갖는 기기움커플러	2003.2.18	-	IEC 60320-2-3(1998)
K 60923	램프부속품, 방전등용안정기(형광램프 제외)의 성능 요구사항	2003.2.18	-	IEC 60923(1995)
K 61347-2-1	램프제어장치, 제2-1부:시동장치(글로우스타터 제외)에 대한 개별요구사항	2003.2.18	-	IEC 61347-2-1(2000)
K 61347-2-8	램프제어장치, 제2-8부:형광램프용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	2003.2.18	-	IEC 61347-2-8(2000)
K 61347-2-10	램프제어장치, 제2-10부:고주파 냉음극방전관(네온관)용 전자식인버터 및 컨버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	2003.2.18	-	IEC 61347-2-10(2000)
K 70000	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, 제2부:전기소독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	2003.2.18	-	-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